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30일, 이해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해민의원)

최근 해킹, 서버 침입, 데이터 유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보호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전년 대비 약 48%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대형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이 전체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한편 2025년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주요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등 현행 정보통신망 보호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보보호 예산 투자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실태 등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 사고 예방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제45조의4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정부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et System) 인증제도를 운영¹⁾하고 있고 그 취지가 개정안과 유사하므로 양 제도 간의 중복 여부 및 제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정보보호 수준 평가 결과에는 민간기업의 보안 체계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수준, 공개방식 등 공개 요건을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1)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